사기·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(향정)·의료법 위반·정신보건

법 위반·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2. 11. 2010고단2287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정원혁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주원 담당 변호사 오인섭 외 1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벌금 15,0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원의 가납을 명한다.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1